

##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·운영 세부 지침 신규조문 대비표(안)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비 고	
<b>&lt;별표 1&gt; 제8조(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)</b>					<b>&lt;별표 1&gt; 제8조(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)</b>						
1-1.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					1-1.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						
구 분	세분류	세부 적요	월기준 인건비	비고	구 분	세분류	세부 적요	월기준 인건비	비고		
일 반 연구원	책임급 연구원	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	4,000,000		일 반 연구원	책임급 연구원	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	6,000,000		- 최저임금 조정 및 연구원 (급)별 기준 단가 조정 - 참여율 계상에 따른 기관부담금 등 제외	
	선임급 연구원	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	3,500,000			선임급 연구원	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	5,000,000			
	석사급 연구원	석사학위소지자	2,500,000			박사급 연구원	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	3,500,000			
	학사급 연구원	학사학위소지자	1,800,000			석사급 연구원	석사 학위소지자	3,000,000			
가. 상기 기준금액은 참여율 100%인 경우의 금액 나. 기준 인건비는 상기금액을 기준 이내로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증빙서류(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)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. 다. 기준 인건비는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,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 기본급),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을 포함하며, 인건비 예산 내에서 법정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.						가. 상기 기준금액은 참여율 100%인 경우의 금액 나. 기준 인건비는 상기금액을 기준 이내로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증빙서류(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)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. 다. 기준 인건비는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,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 기본급),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을 포함하며, 인건비 예산 내에서 법정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.					